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세미나

- 일시 : 2024. 6. 3(월) 14:00~16:00
- 장소 :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F 다이아몬드



▣ 프로그램 ▣

시간	주요내용
14:00~14:05 (5분)	입장 및 기념 촬영
14:05~14:20 (15분)	[개회사]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환영사] 최진식 중견련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축사] 강경성 산업부 1차관
14:20~15:20 (60분)	[주제발표①]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주제발표②]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재정·경영지원방안 (김대홍 송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주제발표③]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윤현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20~15:50 (30분)	[종합토론] (좌 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토론자) 오성현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임국현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과 과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곽관훈 선문대 교수 김대홍 송실대 교수 윤현석 원광대 교수
15:50~16:00 (10분)	Q&A
16:00	폐 회

개회사·환영사·축사

1.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권종호
2. 중견련 회장 최진식
3. 한경협 회장 류진
4. 산업부 1차관 강경성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세미나 ❖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권종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견기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종호 교수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학술행사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회원님
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영사와 축사로 학술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님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행사는 한경협과 중견련이 저희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학술행사의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한경협과 중견련의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유니콘·데카콘 기업이
등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산업에서든 신산업에서든
새로운 플레이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배경에는 기업들이
성장하기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뒤 또 다른 벤처·스타
트업에 투자해 대기업을 키워내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 선진
국과 달리 우리 기업들은 성장 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관해 전문가를 모시고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
습니다.

성장 사다리 구축의 핵심은 벤처·스타트업기업을 중소·중견 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하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의 타개는 성장사다리 구축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한 과도한 지원과 불합리한 규제가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킨 것은 아닌지? 전략적으로 육성 발전 시켜야 할 산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지? 세제면에서의 불합리는 없는지? 오늘은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발제를 맡아 주신 곽관훈 교수님, 김대홍 교수님, 윤현석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 주신 박양균 본부장님, 오성헌 변호사님, 임국현 산자부 중견기업정책과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는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데에는 많은 분들께서 수고를 하십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수고를 하신 학회의 김윤경 총무이사님과 한지유 홍보이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주신 한경협과 중경련의 회장님과 차관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제가 입법화되면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숙의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에서 국회 입법 활동의 선진화 방안이 많이 논의되어,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아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중견련 회장
최진식

【 머리말 】

안녕하십니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진식입니다.

- 오늘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게 된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제1차관님을 비롯하여, 발표를 맡아주신 선문대학교 곽관훈 교수님, 송실대학교 김대홍 교수님, 원광대학교 윤현석 교수님, 토론 참석자 및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성장사다리 구축에 필요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요 현안 】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보호무역주의, 우크라이나 및 중동 사태 등 세계 경제는 급격한 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우리 경제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가 경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 이러한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황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은 바로 기업에 있습니다.

-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혁신성과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혁신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중견기업은 단순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중간 사다리를 넘어, 우리나라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허리’이자 우리경제를 역동경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핵심주체입니다.

-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매출의 14.4%, 수출의 18.0%, 고용의 12.8%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Core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전년 대비 매출액 12.5%, 영업이익 9.0%, 투자 26.7%가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로 성장하였고, 매출액 1조 원 이상 기업도 153개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 하지만 중견기업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 '14년 7월에 시행된 중견기업법은 최근 들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중견기업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장지향형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의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법 체계 개편, 특례 정비를 비롯하여 금융·세제·인력지원 등 중견기업 성장 전 단계를 아우르는 법·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또한, 중견기업에 대한 대다수의 지원정책은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부담 완화에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중견기업법에 규정된 15개 지원정책 중 기술보호, 국외 판로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8개 지원정책은 지원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매출 3천억 원 미만)으로 제한

- 중견기업 육성정책으로 중견기업 수는 증가*했으나, 전체의 85.5%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으로 여전히 질적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18년 4,635개 → '19년 5,007개 → '20년 5,526개 → '21년 5,480개 → '22년 5,576개

-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초체력이 튼튼한 중견기업을 더욱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에 따라 차등을 두는 지원정책이 아닌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세제 혜택 및 인력 지원 축소라는
중소기업 졸업부담으로 인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하지 않도록,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를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기업의 성장DNA를 깨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다수 기업이 중소기업에 갇혀,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무는 것은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글로벌 기업과 경쟁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에 입각하여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 제도 및 입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약 30년* 이상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성장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 중견기업 평균업력(제조업) : 26.9년
- 그 결과, 중견기업계의 창업 1세대들(30~40대 창업)은
어느 누구보다도 현행 기업승계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 때문에
승계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 과도한 상속·증여세로 인해 수십년간 경영해온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여전히 들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에 부합하는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맺음말 】

- 오늘 세미나를 통해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새겨듣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으로서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협 회장
류 진

존경하는 강경성 차관님, 최진식 회장님, 권종호 학회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

오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의 개최를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권종호 학회장님과
최진식 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강경성 산업부 1차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기업들과 산업발전을 든든히 뒷받침해주시는 차관님과
산업부 공직자들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영환경은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호무역 확대와 공급망 재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기업들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반도체 수출은 21개월 만에 최대실적을
달성했고 자동차 수출은 4월말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2%에서 2.6%로,
0.4% 포인트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고군분투와 정부 정책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을 견인한 주역은
바로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신화를 일궈낸 기업들입니다.

삼성은 쌀가게에서, 현대차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몸 담고 있는 풍산도 조그마한 무역상에서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또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의 소중한 결실이자 자연스런 경제의 선순환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여건은 주요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OECD 주요국들은 대개 종업원 300명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보는데, 이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은 전체기업 수의 0.09%에
불과합니다.*

OECD 34개국 중 33위이고, 미국의 10분의 1, 일본에 비해서도
4분의 1 수준에 못 미칩니다.

* 주요국 대기업 수 비중(2023, 한경협) : 미국(0.88% / 1위),
캐나다(0.80%), 독일(0.44%), 일본(0.40%), 영국(0.31%)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순간 기업규제가 대폭(3.2배) 증가하는
반면*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은 줄어듭니다.
규제만 늘고 지원은 줄기 때문에 기업을 성장시킬 유인이
적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기업 자산이 5천억원(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
가면 규제가 3.2배(57개→183개) 증가

앞으로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어서 대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각종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기업성장을 위한 과제 개선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I]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곽관훈**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세미나 ❖

[2024년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세미나]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곽관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Contents



1

사업 다각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2

자금조달방식 다양화를 위한 규제개선

3

법적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업다각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업다각화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1. 의의

▣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다각화 필요

- AI, 디지털전환 등 경제환경의 변화
→ 외부자원을 활용한 신속한 사업다각화의 필요성 제기

▣ 사업다각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의 필요성

- 외부자원을 활용한 사업다각화 과정에서 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규제의 문제 발생
 - 기업집단을 통한 소위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시각 존재
 - 기업집단간 내부거래에 대한 획일적 규제 등
- 외부자원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등에 대한 지원시스템 부재
 - 일본의 경우 중소, 중견기업의 외부자원 활용을 위한 M&A를 적극 권장
→ M&A에 대한 지원, 주식대가 M&A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2.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

(1) 기업집단에 대한 인식제고

▣ 경제력집중 문제 등 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함

-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상법은 기업집단에 대한 고려 부족
 - 경제력집중 등 문제 발생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대응
 - 공정거래법상 규제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모든 기업집단을 일률적으로 규제
 -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 규제 체계

- 기업집단의 문제점들이 주로 부각되는 과정에서 부정적 인식 확대

▣ 일본의 경우 기업집단을 통한 '그룹경영'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기업집단의 긍정적 효과에도 주목

- 공정거래법이 아닌 회사법상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구축을 통한 규제



[참고] 일본의 '그룹경영'에 대한 인식 및 기업집단 규제

▣ 기업집단에 대한 인식

- 일본은 소위 '그룹경영'이라고 하는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이 증가하면서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

→ 그룹 전체의 회사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개별 회사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상당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봄

○ 구체적인 그룹시너지의 예시

- 그룹공동구매에 의한 단가 인하 및 거래처에 대한 발언력 증가(규모의 경제)
- 지명도 높은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에 의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신뢰 획득(브랜드 공유)
- 제품 기술의 전용 등, 이미 획득한 노하우의 그룹내 공동이용(노하우 공유)
- 서비스 및 네트워크 기반 등 기존 존재하는 경영기반의 이용(경영기반의 공유)
- 벨류체인의 상부에서 하부까지 그룹내 구축을 통한 영업코스트 경감 등(벨류체인의 확대)
- 그룹내 인원재배치를 통한 기술부족해소 및 워크포스의 보완(인원의 배치)
- 그룹내 자금이동에 의한 이용자금의 유효이용 및 부족자금 보완(최적자원배분)

[출처] 山田和延, "日本企業グループ經營の課題と對應", 「KPMG Insight」(2014)



▣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 기업실무에서 그룹경영 보편화에 따른 그룹지배구조 구축의 필요성 제기

- 회사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다중대표소송 도입 및 그 대안으로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책임 도입방안 논의
- 자회사 감독책임 규정의 경우 감독의무가 불분명, 그룹경영 위축의 우려로 반대 의견이 많아 다중대표소송 도입으로 결론

○ 일본은 2014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법무성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집단 내부통제시스템을 회사법상 규제로 격상

- 모회사 이사에 대해 그 선관주의의무의 내용으로서, (1) 기업집단의 상황에 따라 해당 기업의 그룹 내에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정비를 행하고, (2) 기업그룹 전체의 가치향상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에 의해 모회사의 기업가치를 유지, 향상시킬 의무를 부여함



(2)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개선

▣ 사업다각화를 통한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그룹경영을 통한 시너지 필요

○ 경제력집중 우려가 없는 성장단계 기업의 그룹경영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규제 등 완화 필요

- 성장단계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의 상황에 맞게 그룹경영을 통해 사업다각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획일적 기준의 원인규제에서 벗어나 문제발생에 대응하는 폐해규제 필요

○ 모든 기업집단에 대한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성장단계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 필요

- 장기적으로는 일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집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3.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성장단계 기업의 적극적인 M&A를 통한 사업다각화 추진 필요

- 내부자원만을 통한 사업다각화는 한계가 있으며, 외부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 외부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M&A활성화가 기업성장의 중요 요소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에 있어 사업다각화 추진뿐만 아니라 사업승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M&A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 진행 중

- 2018년 ‘산업경쟁력강화법’개정
 - 주식대가 M&A에 대한 특례(현물출자규제 적용배제 등)
- 2019년 ‘회사법’ 개정
 - 주식교부제도 도입
- 2024년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
 - 중견기업 M&A에 대한 손금산입 인정(두번째 M&A 90%, 세번째 M&A 100%)

▣ 기업들이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 필요



[참고] 일본의 M&A활성화 정책

▣ 2018년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 사업자가 외부경영자원 활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대가 사업재편을 ‘특별사업재편계획’으로 규정
- 특별사업재편계획 실행하기 위해 M&A를 하는 경우 회사법상 현물출자규제 적용 배제 및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조치 도입

▣ 2019년 회사법 개정을 통해 주식교부제도 도입

- 주식회사가 다른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하기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양수하고, 그 대가로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제도
 - * 종래 주식교환제도는 대상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활용 가능하였는데, 주식교부 제도는 다른 회사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활용 가능함
- 일본의 경우 기업의 필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주식을 대가로 하는 M&A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행하고 있음



[참고] 일본의 M&A활성화 정책

☐ 2024년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

○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 해외투자에 집중하는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은 국내투자, 고용, 급여인상, 지역에 양질의 고용제공등 국내경제에 기여도가 큼

○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중견기업의 법적 정의를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2,000명 이하인 기업’으로 규정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와 의제 대기업 제외)
- 중견기업 중 (1) 양질의 고용창출, (2) 장래의 성장성, (3) 경영력을 갖춘 임금수준 및 성장의욕이 높은 중견기업을 ‘특정중견기업자’로 규정
- 특별중견기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확대, M&A시 두번째 M&A부터 90%, 세번째부터는 100% 손금산입하고 거치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자금조달방식 다양화를 위한 규제개선



1. 기업의 자금조달 현황과 문제점

▣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은 기업 규모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성장단계에 있는 중견기업의 경우 시중은행 차입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큼

○ 중견기업 자본조달 현황

구분	내부보유자금	시중은행차입	회사채발행	IPO	펀드 등 투자유치	정부정책 자금활용	기타
2018년	65.2	23.5	2.2	0.4	0.6	2.0	6.2
2019년	68.7	21.9	1.6	0.2	0.3	1.9	5.4
2020년	67.6	22.0	2.2	1.8	0.3	1.8	5.8

▣ 성장단계 기업의 장기적 자본조달을 위해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필요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남

- (1) 상장 및 주식발행절차의 복잡성
- (2) 상장후 공시의무 등 법률상 의무의 가중
- (3) 지분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



2. 자금조달 방식 다양화를 위한 개선방안

(1) 상장 및 공시업무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성장단계의 중견기업 등이 기업공개 및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컨설팅 시스템 구축

- 예를 들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상장기업에 상장 및 공시업무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상장을 원하는 중견기업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구축 필요
-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사업재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중견기업등의 상장 및 공시업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

(2) 상장회사 규제의 단계적 적용

▣ 성장단계의 중견기업등에 대해서는 상장회사 규제의 단계적 적용을 통한 부담완화



(3) 종류주식의 다양화 : 지분비율과 다른 지배구조의 실현

▣ 성장단계 기업이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 경우 지분비율과 다른 지배구조 필요

- 대부분 '주주간 계약'을 통해 지분비율과 다른 지배구조를 형성
- 그러나 주주간 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채권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회사법상 효력은 인정 X
 - * 회사법은 단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법적 거래를 회사법상 인정할 경우 단체법률관계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

▣ 종류주식의 다양화로 지분비율과 다른 지배구조의 회사법적 효력 확보 필요

- 주주간 계약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주식 발행이 필요
 - 예를 들어 이사 선임에 대해 내용을 달리하는 종류주식, 이사선임에 대한 동의권부 주식 또는 거부권부 주식등의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성장단계에 기업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의 악용 우려는 해소 가능



법적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제개선

법적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제개선

▣ 기업들의 합병 등의 경우 주주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절차, 채권자보호절차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음

- 주주 및 채권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 기업입장에서는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목적의 사업재편의 경우 절차를 완화해주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제정되었음
 - 기활법의 경우 사업재편기업에 대해 소규모분할, 소규모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 채권자보호절차 등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 절차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
- 그러나 '기활법'의 경우 (1)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기업, (2)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 (4)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 (5) 탄소중립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으로서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은 기업만 적용 대상임

▣ 성장단계 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재편에 필요한 경우, 기활법을 통해 절차 간소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II]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재정·경영지원방안

송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김대홍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세미나 ❖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재정·경영지원방안

김대홍 (승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중견기업법 상시화

- 「중견기업법」은 2014년 10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지만, 지난 2023년 4월 18일 일부개정으로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였음
- 이를 통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 근거의 미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음

중견기업법 제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 제명으로 제정
- 「중견기업기본법안」(새누리당 이강후 의원 대표 발의)
-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 「중견기업 성장촉진 특별법안」(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대표 발의)
- 위 3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한 것이었음

중견기업법 제정

「중견기업기본법안」 (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특별법안」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제1장(제1조~제6조) 총칙	제1장(제1조~제3조) 총칙	제1장(제1조~제4조) 총칙
제2장(제7조~제9조) 중견기업으로의 성장환경 조성	제2장(제4조~제8조) 중견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제5조~제7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제10조~제13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제3장(제9조~제18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제3장(제8조~제18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제4장(제14조~제17조) 중견기업 기반 구축	제4장(제19조~제24조) 중견기업의 경쟁력강화 기반 조성	제4장(제19조~제26조)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제5장 (제18조~제21조) 보칙	제5장 (제25조~제27조) 보칙	제5장 (제27조~제32조) 중견기업 성장 기반 조성
		제6장 (제33조~제36조) 보칙 및 벌칙

중견기업법 개정

개정시기	주요내용
제1차 일부개정 [시행 2016.8.30] [법률 제14272호, 2016.5.29, 일부개정]	제2조제1호 나목 개정, 제17조의2 신설, 제17조의3 신설, 제17조의4 신설, 제17조의5 신설, 제17조의6 신설, 제23조제2항 개정
제2차 일부개정 [시행 2017.6.3] [법률 제14366호, 2016.12.2, 일부개정]	제15조의2 신설
제3차 일부개정 [시행 2019.6.12] [법률 제15923호, 2018.12.11, 일부개정]	제25조 개정, 제25조의2 신설
제4차 일부개정 [시행 2019.7.9] [법률 제16207호, 2019.1.8, 일부개정]	제6조의2 신설, 제17조의7 신설, 제26조 개정, 제28조의2 신설
제5차 일부개정 [시행 2021.9.16] [법률 제18282호, 2021.6.15., 일부개정]	제2조제1호 개정, 제3조제5항 신설, 제15조의2 개정, 제17조의8 신설, 제24조제1항 개정
제6차 일부 개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8호, 2023.4.18, 일부개정]	제23조제3항제5호 개정, 부칙 제2조 삭제

중견기업법 개정

특례조항	중견기업 범위
제12조 (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모든 중견기업 또는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에 따라 기준 상이함
제13조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 등"이라 한다)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제14조 (대기업인 이력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평균매출액 등이 1,500억 원 미만일 것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했을 것
제15조 (기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제15조의2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모든 중견기업
제16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모든 중견기업

중견기업법 개정

제1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모든 중견기업
제17조의2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일 것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했을 것
제17조의3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모든 중견기업
제17조의4 (국의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일 것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했을 것
제17조의5 (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제17조의6 (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모든 중견기업
제17조의7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제17조의8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중견기업 지원 성장단계별 특화 문제

- 중견기업 지원 특례 조항이 대폭 신설되었던 2016년 제1차 개정 당시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이 업종에 따라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4백억원에서 1천5백억원까지로 되어 있었음
-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중견기업으로 들어가게 되고 중견기업의 실제 매출액의 범위를 보면 1조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은 특별한 정부 지원 등이 없이도 충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판단하에
- 종전에 하도급이라든가 공공구매에 있어서 중견기업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설정을 2천억원, 3천억원대로 맞춘 것에 준하여 **3천억원으로 상정**을 하였던 것임

중견기업 지원 성장단계별 특화 문제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전체에 필요한 지원도 있고 글로벌 전문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 관점에서 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중견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시책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의 책정에 있어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고, 그에 맞추어 중견기업 지원시책이 특화되어야 할 것임

「중견기업법」 구조적 정합성 문제

- 제1장 총칙
- 법 제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제1장 총칙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시행계획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중견기업법」 구조적 정합성 문제

-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 제2장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총칙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과 각칙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혼재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이라는 장 표제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음

「중견기업법」 구조적 정합성 문제

- 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 제3장의 입법 의도는 우수 중기업군의 선별·확충을 통한 중견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역량 강화 대상인 중견기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중견기업법」 구조적 정합성 문제

- 제4장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 제4장에 대해서는 해당 장에 포함된 조항들 대부분이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장 표제에 ‘경쟁력 강화’라는 법문이 들어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중견기업’ 범위 체계화

- 중견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치한 기업으로 설정하되, 중견기업의 범위를 필요로 하는 지원의 형태에 따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중견기업법」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모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평균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 및 중소기업 종료 후 3년 이내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등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중견기업’ 범위 체계화

- **성장촉진 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성장단계에서 볼 때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단계로 진입한 중견기업이 지원 시책의 갑작스런 중단에 따른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중견기업
- **혁신역량 중견기업** :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지원수요가 큰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이 필요한 중견기업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위상 제고

- 「중견기업법」 제정 당시에 ‘중견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음
-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견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이 되도록 하였음

‘중견기업연구원’ 설립

- 「중견기업법」 제정 당시 제23조의 표제는 ‘전문기관’이 아닌 ‘전담기관’이었는데, 2016년 제1차 개정에서 ‘전문기관’으로 변경하였고,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변경하였음
- 이에 대해서는 향후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외에 지원 분야별로 전담기관을 두어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가 있었음

‘중견기업연구원’ 설립

-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2020년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를 신설하여 정부는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연구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이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경우와 같이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중견기업 지원시책 전담기관으로 「중견기업법」에 ‘중견기업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견기업법」 전부 개정

- 제1장에 포함된 조문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 표제와 달리 ‘성장촉진’에 관한 기본·시행계획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개정이 필요함
- 제1장 제2조(정의)의 경우 중견기업 범위의 체계화에 맞추어 **성장촉진 중견기업**과 **혁신역량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의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중견기업법」 전부 개정

- 제2장의 경우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제9조),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제10조)은 중견기업 전반에 걸친 지원시책의 설정 기준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1장 총칙편에 규정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중견기업법」 전부 개정

- 제2장 제12조부터 제17조의8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조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제에 기반하여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
- 이 때문에 조의 표제가 ‘특례’가 됨으로써 중견기업에 별도의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고, 조문의 내용과는 별개로 한정된 재원에 중소기업 지원 축소라는 비판에 직면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중견기업법」 전부 개정

-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이고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인 중견기업과 단순히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그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이미 2016년 제1차 개정 당시 논의가 있었던 바와 같이 현재의 경제 규모에 맞추어 3천억에서 5천억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중견기업법」 전부 개정

- 제3장의 경우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로 되어 있지만, 혁신역량 강화 대상인 중견기업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이 필요함
- 우수 중소기업군의 확충을 통한 중견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3장의 입법 취지에 따라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제3장에 포함된 제18조 이외에 다른 조문에도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등의 선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함

「중견기업법」 전부 개정

- 제4장의 경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이라는 장의 표제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특화된 조문을 찾기 힘들므로, 그에 관한 개정이 필요함
- 법 제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임에 따라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의 장 표제와의 균형을 위해 제4장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으로 장 표제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제4장에 포함된 조항의 내용은 ‘중견기업 지원 기반 조성’내지 ‘중견기업 기반 구축’이라는 표제에 더욱 어울리기 때문에 장의 표제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중견기업법」 전부 개정

- 모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시책을 위한 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신설되는 장의 표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 제명에 맞추어 ‘중견기업등의 경쟁력 강화’라고 명명할 수 있음
- 법 제명에 맞출 뿐 아니라, 매출액 규모 내지 종업원 규모 상위의 중견기업군도 대기업과의 관계나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경쟁력 강화’라는 표제를 명명한 것임

「중견기업법」 전부 개정

- 모든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나 지원시책을 구분하여 신설되는 장에 위치시킬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모든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은 중견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이 아닌 「중견기업법」 법문 자체에서 그를 정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
- 중견기업 전부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특례 조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 조항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중견기업기본법」 제정

- 중견기업을 법령 본문에 포함하는 법령이 147여개, 조문 제목에 포함하는 법령이 85여개인데 비해서 중소기업을 법령 본문에 포함하는 법령은 1,029여개, 조문 제목에 포함하는 법령은 760여개임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견기업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중견기업기본법」 제정

- 「중견기업법」 제정 당시에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동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일반법 내지 기본법이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반법으로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감안하고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일단은 특별법으로 한 면이 있었음
-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제도를 체계화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증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주제발표Ⅲ]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현석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세미나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윤현석 (원광대)

목차

- 기업의 성장
- 성장단계별 세제지원 현황
- 성장에 따른 세제지원 축소
- 성장사다리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방향

기업의 성장

• 기업의 성장단계

- 창업 단계 : 스타트업 (Start-ups)
- 성장 단계 : 중소기업 (SMEs)
- 확장 단계 : 중견기업 (Middle-Market Enterprises)
- 성숙 단계 : 대기업

성장단계별 세제지원 현황

• 창업중소기업(조특법 §6)

- 감면대상 : ① 창업중소기업,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③ 창업벤처중소기업, 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감면금액 :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과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100% 감면

* 신성장서비스업종 해당 중소기업 : 3년간 법인세(소득세)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 상시근로자 증가 시 최대 50%(청년창업중소기업 등의 일정한 경우 25%) 추가 감면

•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99의9)

• 취득세 75% 감면(지특법 §58의3①), 재산세 3년 면제 추후 2년 50%감면 (지특법§58의3 ②) 등: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의5)

성장단계별 세제지원 현황

• 중소기업

- (R&D·투자 등)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경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기술이전 세액공제 등
- (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지원 등
- (기업상속) 기업상속공제,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기업상속 상속세 연부연납,
- (기타)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수출 중소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특허보세구역 특례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성장에 따른 세제지원 축소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세제지원 축소

- 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의 회귀검토 요인 : 1순위는 조세부담
-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요인 : **조세혜택 61.6%**, 금융지원 15.7%, 판로규제 20.0% 順(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성장 기피를 유발하고 중소기업→중견→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의 단절을 심화
-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6%로 중소기업(14.4%)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18.4%), 상출집단 소속 기업(19.2%) 보다도 높은 수준
- * 법인세 실효세율('21년 신고기준) : 전체 18.4%, 상출 19.2%, **중견 19.6%**, 중소기업 14.4%, 기타 21.7%(국회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조세)

성장에 따른 세제지원 축소

-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축소

	연구개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당기분			증가분	당기분			증가분
	중소	중견	대		중소	중견	대	
일반연구개발	25	8~15	2	중소 50 중견 40 대 25	10	5	1	3
신성장원천기술	30~40	25~40	20~30		12	6	3	3
국가전략기술	40~50	30~40	30~40		25	15	15	4
중견기업의 적용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성장에 따른 세제지원 축소

- 중소기업 →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연차에 따라 급격히 축소
 - 중소기업 25% → 중견 1~3년 차 15% → 중견 4~5년 차 10% → 중견 6년 차 이상 8%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는 10% 또는 그 이상 차이가 있음
-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는 코스닥상장 중견과 기타 중견으로 구분하여 중견기업간 차별이 존재
- 국가전략기술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동일하게 취급
- 통합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는 10% 또는 그 이상 차이가 있음

성장에 따른 세제지원 축소

• 고용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등 축소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병역이행 복직 기업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고용기업 세액공제 : 지급 인건비의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 초과임금증가분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 청년고용 증대 기업 세액 공제 : 증가인원수 중소기업 1천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 : 고용증가 인원수 중소기업 1,2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 고용창출 효과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액공제의 금액 등의 차등으로 인한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세제지원 상으로 보면, 중견기업 성장 보다 중소기업 유리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방향

• 중견기업법 상시화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체제 구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글로벌 전문기업 성장사다리 필요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규모기준 충족 AND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규모기준 초과 OR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법인의 피출자기업
독립성 기준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2)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 피출자기업 아닐 것 3)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규모기준 충족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2)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법인 피출자기업 아닐 것 3)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방향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 중견기업 → 대기업 성장 세제지원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 (3년에서 5년 확대)
- 조특법 졸업유예기간 4년(해당 연도 + 3년) → 6년 유예기간

• 중소기업, 중견기업 세제지원 기준 현실화

- 중견기업의 경우 : 2013년 매출액 기준 3천억원, 5천억원 현실성이 있는 기준 의문
-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의 기준 부터 현실화 : 자산총액 5천억원, 매출액기준
- GDP 기준과 연동되는 기업체계의 기준을 현실화 : 매출액, 자산총액, 종업원 수 등 고려
- 일본의 경우 : 종전 중소기업 (종업원 300명 이하, 자본금 3억엔 이하), 그 외 대기업

2024년 중견기업 도입 - 종업원 수 2000명 이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방향

• 기업의 성장 사다리로서 중견기업 활성화

-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 상향을 통한 세제지원
-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 상향 필요
-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상향
- * (현행)중소 25%, 중견 8~15%, 대 2% → (개정안)중소 25%, 중견 20%, 대 10%
-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 35~45%
- 통합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 * [일반] (현행) 중소 10%, 중견 5%, 그 외 1% → 중소 12%, 중견 7%, 그 외 3%
- [신성장·원천기술] (현행) 중소 12%, 중견 6%, 그 외 3% → 중소 18%, 중견 10%, 그 외 6%
- [국가전략기술] (현행) 중소 25%, 중견 15%, 그 외 15% → 중소 25%, 중견 20%, 그 외 15%
- 고용창출에 대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등 완화 : 중견기업 세액공제 금액 등 상향
- 지방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 부동산 취득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감면 : 중견기업까지 확대 필요

[종합토론]

(좌 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토론자) 오성현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

임국현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과 과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곽관훈 선문대 교수

김대홍 송실대 교수

윤현석 원광대 교수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세미나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세미나 토론문
- 기본기와 원칙을 다시 생각한다

오성현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 [확인] 우리나라 경제 현황과 전망

- 저성장 지표↑(내수침체, 저출산·고령화, 제조업 기피 등)
- '24년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 지속(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부동산시장 침체 등)
- '24년 수출 증가 모멘텀에 대한 고민↑

□ [재점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중견기업의 범위 ‘체계화’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이에 따른 지원필요 및 지원형태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있음
- 개념상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이지만, 입법 목적(중견기업법 제1조)처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실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 등 정부가 지원하려는 시책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중견기업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공사례’를 빈번하게 만들게 될 것임
- 중견기업기본법 제정도 다시금 기본기와 원칙에 돌아와서 기본법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동의.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중견기업에는 중견기업에 대한 또다른 맞춤형 지원이 있어야 제대로 된 성장사다리가 구축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되어야 함

□ [개선]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 (사업다각화, 자금조달방식 다양화 등)

- 기본기와 원칙(중견기업법 제4조) :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 적어도 뒷덜미를 잡거나(하향평준화), 뒷통수(규제 불의타)를 치지는 말자, 규제의 존재 이유를 기본기에서 다시 상기해 봐야
- 사업다각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는 별개로 이제는 모양새 신경쓰지 않

고, ‘Innovation’ 이나, ‘Iconic’ 그리고 ‘Synergy’ 에 목숨을 걸어야 할 판. 페라리가 옷을 만드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

- 국제경쟁력 가질 때까지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중견기업의 M&A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에 동의
- 자금조달방식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은 찬성. 그러나 상장회사 규제의 단계적 적용과 종류주식의 다양화로 인해 중견기업만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될지에 대해서는, 전체 자본시장에서의 혼선 등 우려되는 점들이 있어서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다다익선] 세제지원

- 기본기와 원칙(중견기업법 제4조) :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
- 국제 경쟁력 있을 정도까지 스타 기업을 키우려면 세제 혜택에 인색할 이유 없음. ‘형평성’ 관철만이 능사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함
-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검토 요인중 1순위가 조세부담이라면, 이런 상황이 정상은 아닐 것임
- 성장 단계에 따른 세제지원 축소도 현재와 같은 복잡한 기준이 아닌, 좀더 심플하게 조금씩 축소하여야함
- 중견기업의 사업가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사업을 접고 핵심 사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사태는 꼭 막아야
- 성장사다리로서의 중견기업의 활성화를 바란다면, 다양한 세제지원 방향을 고민하여야 할 때임

□ [의견제시] 성장사다리, 지금 집중해서 제대로 안 만들면 미래가 없다

- ‘Innovation’ , ‘Iconic’ , ‘Synergy’ 그리고 ‘Collaboration’ 등의 자주 언급되는 트렌디한 개념어들은 다 이유가 있음. 이를 애써 무시할 필요 없음
- 국가 차원에서 일단 중견기업이 신바람 나서, ‘글로벌 전문기업’ 이 될 때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토대(기본기와 원칙)를 정말 제대로 만들고, 판을 깔아준 적이 있었는지 되돌아 보아야함

-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찍은 것으로 만족하고, 앞으로의 하향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국가적으로 슬픈 일
- 중견기업을 국가 대표선수로 키우기 위한 성장사다리를 법제, 세제지원, 규제 개선 등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을 수도 있음
- 탄탄한 중견기업들이 지역마다 건재하며, 명문장수기업으로 100년을 훌쩍 넘긴 중견기업들이 지역경제를 먹여살리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함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세미나 토론문

박양균 정책본부장(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중소기업 보호·지원’, ‘대기업 규제’ 라는 이분법 기업정책에서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정책’ 으로 전환 필요
- 지난 수십년 간 국내 기업정책은 ‘중소기업 보호·지원’ ‘대기업 규제’ 라는 이분법에 따라 추진해 왔음.
- 중소기업의 성장 부담 완화를 위해 ‘11년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되고 ‘14년 중견기업법이 제정·시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이분법적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인데, 국내 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맞춰 있음
-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도 중요하지만,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도 중요. 중견기업도 대기업도 늘어나야 양질 일자리가 많이 창출하고, 국가경제도 활성화 될 것
- 성장사다리 구축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기업을 옥죄어 성장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 개선 필요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중견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가로놓인 과도한 규제의 장벽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의 성장사다리는 가동할 수 없음
-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맞닥뜨리는 이른바 ‘성장 걸림돌’ 과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에서 342개로 증가하는 차별규제를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법·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함

1.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 발제자께서 기업집단에 대한 일률적 규제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부정적인 측면은 규제해야 하지만, 신기술 분야 진출 등 사업다각화를 위해 그룹경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

-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도 존재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도 존재
-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획일적 규제보다는 더 많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중견기업 자본조달시 내부유보나 시중은행차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류주식 다양화 및 성장단계를 고려한 자본시장 규제유예제도 도입 등 자금조달 방식 다양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제안
- 규제 개선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중견기업의 성장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금융지원 확대.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금융지원 축소가 중견→중소기업으로 회귀검토 요인 중 하나로 응답
- 특히,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견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설비투자, 연구개발 및 인수합병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지만, 원활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제2 주제)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재정·경영지원방안

- 발제자께서는 중견기업법의 제·개정 과정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우선 중견기업법을 전부개정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견기업기본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시책으로 ‘모든 중견기업’, ‘성장촉진 중견기업’, ‘혁신역량 중견기업’으로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
- 중견기업법이 제정·시행된지 10년 경과되었으며, 자국우선주의·공급망 재편·디지털 전환·ESG 규범 강화 등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 지원으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 축소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 축소 우려는 없음

중견기업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② 생략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실제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3년 32.5조원

에 이르고 있음¹⁾

* ('15) 14.8조원 → ('21) 29.1조원 → ('23) 32.5조원

3. (3주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 발제자께서는 기업 성장에 따른 세제지원 축소를 지적하며 기업의 성장사다리로서 중견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 세제지원 기준인 매출액 상향을 제시하였는데, 전적으로 동의함
- 현행 세법상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중견기업 구간을 설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제한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중견기업 범위	세제지원 내용
3년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 상속세 연부연납, 특허보세구역 특례
3년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R&D·투자 등) 통합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경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기술이전 세액공제 등 -(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지원 등 -(기타)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상생협력 기금출연 세액공제, 수출 중 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

-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는 성장 기회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음
 - 중견→중소기업으로의 회귀검토 요인* 1순위는 조세부담이며,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기업보다 높은 수준(19.6%)
 -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요인 : **조세혜택 61.6%**, 금융지원 15.7%, 판로규제 20.0% 順 (중견련, 2023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 법인세 실효세율('21년 신고기준) : 전체 18.4%, 상출 19.2%, **중견 19.6%**, 중소 14.4%, 기타 21.7%(국회에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조세)
 - 고용확대에 따른 세제지원의 경우 중견기업은 평균 약 290명 정도 고용하고 있어 중소기업보다 고용창출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 보다 중소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음

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24.4.29

-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대기업과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R&D나 통합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필요
-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R&D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 중견기업에 한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중견기업(외감법인과 코스피 상장 포함)으로 확대 필요

